

대학 재정지원사업 정밀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

< '21.5.31,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>

한국연구재단이 2020년도에 실시한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밀정산의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,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공통 지적사례

지적 유형	지적사례	상세내역
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, 관광성 비용 • 단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집행 • 사업과 무관한 여비 집행 • 교직원 동아리 활동비 집행 	p3~p5
대학 자체지급 기준 초과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비 초과 집행 • 강사료 초과 집행 • 회의비(식대) 초과 집행 • 해외연수프로그램 선발기준 미 충족 학생 연수비 지급 	p6~p9
기존교직원 부적정 수당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점인정 계절 학기수업 학생선발을 위한 기존 교직원에게 평가수당 지급 • 교양과목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사례발표 등에 참여한 기존교직원에게 발표비 등 지급 • 사업 전담직원이 아닌 기존교직원에게 시간외 수당 지급 	p10~p13
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입교수 워크숍 진행 경비 집행 • ◇◇◇과 40주년 기념행사 및 홈커밍데이 행사비 집행 • ◇◇◇과 전공 학술제 개최관련 부대비용 집행 • 사업내용과 무관한 학교 셔틀버스 비용 집행 	p14~p16
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년 미만 근무 퇴사직원 퇴직적립액 미 반납 • 개인사유로 인한 항공취소 수수료 지급 • 프로그램 운영 시 여행사 수수료 중복 지급 	p17

※ 다만, 해당 사례의 세부내용과 사업별 집행기준·목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

□ 주요 사업별 지적사례

사업명	지적사례	상세내역
BK21플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 • 성과급 부적정 집행 	p18
LINC플러스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건비의 국고지원금 70% 초과 집행 •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집행 • 참여기업의 기술지도비(자문) 초과 집행 • 해외연수프로그램 학생인솔을 위한 교직원 인원 초과집행 • 기업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경비 지원 • 현장실습비 초과 집행 • 부적정 교안개발에 대한 원고료 집행 	p19~p22
국립대학육성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적격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	p23
대학혁신지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경비 집행 	p23
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빙자료가 부족한 회의비 집행 •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• 부적정 교재개발에 대한 원고료 지급 •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현금성 경비 집행 • 봉사활동 수혜자에게 물품 지급 •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집행 	p24~p27

1.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비, 관광성 비용 등 집행

- (사례1) 교직원들간의 “소통 및 협업활성화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“OOOO테마파크” 입장료 등 집행
- (사례2) “교수혁신발전방안”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해상케이블 탑승 등 관광체험비 집행
- (사례3) “아시아 대학 간 평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”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“아쿠아리움” 입장료 등 관광성 집행

② 단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 집행

- (사례1) 사업단 전담직원의 기술평가사 자격취득 등록 및 응시료 집행
- (사례2) 교직원의 드론항공촬영 자격증 발급비
- (사례3) “학습튜터링 및 스터디그룹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활용자격시험 및 외국어 시험 응시료,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 집행
- (사례4) 교내 자격 증 또는 공무원 시험 등 취업대비를 위한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관련 동영상 강의로 집행

③ 사업과 무관한 여비 집행

- 해외연수프로그램을 6박 8일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나, 증빙자료가 부족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국외여비 집행
-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 참가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집행

④ 교직원 동아리 활동비 집행

- 방학기간 중 직원 대상 동아리(자전거하이킹, 거리공연 등) 활동비 지원
- ※ 국립대학의 경우 사업계획 컨설팅 시 등 내용에 대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사업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

<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>

-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
- **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**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기본원칙

- **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**

③ LINC플러스육성사업

<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**(산학협력 고도화형)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※ LINC+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
- **(사회맞춤형학과 증점형)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사회맞춤형학과 증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
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

<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**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**

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(ACE+)

< 2017년 ACE+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>

○ 기본 방향

- 각 대학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, **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항목과 내용에 집행**
- 대학은 발전 계획과 **사업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개선, 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**

⑥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>

제5조(사업비 중앙관리) ③ **사업비는 중앙관리 하에 계획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교사 건축 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**

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예산편성 및 집행 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**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·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**

⑧ LINC플러스 육성사업(전문대)

<전문대학 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**(산학협력 고도화형)**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·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**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 - ※ LINC+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
- **(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)**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**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
2. 대학 자체지급 기준 초과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여비초과 집행

- (사례1)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였으나, 계약금액 상산출기준 내역이 국외여비(식비, 숙박비 등) 지급 기준단가를 초과
- (사례2) 해외어학연수 인솔경비 지급 시 해당 국가의 단가기준을 “나”급을 “가”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국외여비 부적정 집행
- (사례3) 해외연수프로그램 진행시 여행사에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, 해당 인력의 여비 중 일비를 전액 집행
- (사례4) 사업과 관련 된 회의 참석 시 대중교통(택시) 이용비를 자체기준 여비 외 별도 여비 지급
- (사례5) ○○대학은 사업단 자체 여비규정을 대학자체 여비 기준보다 일비를 높게 규정하여 여비 집행

② 강사료 등 전문가 활용비 초과 집행

- (사례1)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용한 강사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를 별도 지급
- (사례2) 창업 실무자격취득강좌 진행 시 보조강사에게 보조강사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

③ 회의비(식대) 초과집행

- (사례1) 성과포럼 워크숍 행사 진행시 석식비 초과 집행
- (사례2) 소통하는 조직을 위한 팀장 리더쉽 워크숍 행사비용 집행 시 식비 한도 초과
- (사례3) 관리운영직 “소통 및 협업활성화” 프로그램 진행시 식비 한도초과

④ 해외연수프로그램 선발기준 미 충족 학생 연수비 지원

- 해외연수프로그램 학생선발을 위해 교내 모의토익 상위 100명(컷라인 745점)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선발하였으나 모의토익 상위 663번째(모의토익 475점)인 학생을 선발하여 연수비 지원

□ 관련규정

- 해당 사업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에서 정한 자체기준 으로 계상 및 집행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'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(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포함)'과 동 지침을 따름

※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, 기본계획, 동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(지침)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기본원칙

-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,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

③ LINC플러스육성사업

<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,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

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

<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 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

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(ACE+)

< 2017년 ACE+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>

○ 사업비 집행 기준

-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,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
-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(인센티브 포함) 지급 불가
 - * 단,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% 범위 내 집행 가능
- 개별사업 운영과 연계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는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30% 범위 내 집행 가능
- 성과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일회성·단발성 사업(프로그램) 운영비 불가
- **이외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**

⑥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>

제15조(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)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61조를 따른다.

1.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
2.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
3.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(평가기준 포함)
4.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
5.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(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).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
6.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
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예산편성 및 집행 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**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·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**
-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,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
-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
 - ※ 3유형 대학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, 후진학 선도대학(주관대학)과 계약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대학으로 이체하여 집행 가능하며, 협력대학에서의 사업비 관리도 중앙관리를 실시해야 함
 - ※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**관계법령 및 기본계획, 동 사업의 규정·정의서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(지침)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**

⑧ LINC플러스육성사업(전문대)

<전문대학 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>

○ 사업비 집행 원칙

- **대학 총장은**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**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,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**

3. 기존 교직원 부적정 수당성 경비 지급

□ 지적내용

① 학점인정 계절수업 성적 평가수당 지급

- 2019년 겨울계절수업(학점인정) 학생선발과 프로그램을 수행한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기존교직원에게 평가수당 지급

② 교양과목 워크숍을 진행한 기존교직원에게 수당 지급

- “교양과목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”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존 교직원에게 사례 발표비 및 사회비 등 수당성 경비 집행

③ 기존 교직원 시간외 수당 지급

- 해당사업 “수정사업계획서”를 작성한 기존 교직원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부적정 집행

□ 관련규정

- 기존 교직원에게는 부가적업무로 볼 수 없는 수당 및 인건비는 집행 불가함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육성사업관리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사업비 수혜 대상

-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

-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,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강의료, 원고료, 정책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

※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, '교육.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'으로 편성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집행

<별표 1>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

○ 집행불가사항(사례)

- (인건비) 소속 교원 등 내부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

비목	집행 불가 항목	비고
1. 인건비	-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,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 등	
3.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	-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비 - 중복·이중지원 경비(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)	-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(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) 지급 가능 ※ 단,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·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(운영수당, 연구용역비 등)으로 편성하되,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

③ LINC플러스육성사업

<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별표 1>

○ 수당 및 기술지도 자문비 지급기준

구 분	지 급 기 준	지 급 액	비 고
기술지도(자문)비	1일 4시간 기준	20만원	
위원수당	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수당	20만원/일 이하	

※ 대학(사업단 포함) 내부 구성원에게 회의 및 연구수당 등 지급 불가

※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 2](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)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

< LINC+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 자주하는 질의(FAQ) >

Q-16 사업단 참여학과 소속 교원 및 비참여학과 교원에게 수당 및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까?

A-16 사업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**내부교원에게 별도의 회의 수당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.** 다만, 내부교원이 정규 교과목 외 LINC+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별 강좌, 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다.

※ LINC+사업 중점형 FAQ “Q-8, A-8” 과 동일

④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

<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>

○ 사업비 수혜 대상

- 내부 교직원에 대한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

- 단,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(세부 사업 관련 특강, 비정규 강의,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)에 따른 강의로 및 원고료 지급 가능

※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로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“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”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 가능

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(ACE+)

< ACE+사업비 집행 대학 동등 가이드라인_참여인력)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범위 >

○ 기존 교직원

<주요 부가적 업무로 지급되는 수당>

- 자체평가 활동에 의한 심사(자료)표, 심사 보고서 작성 등의 성과물이 있을 시 인센티브 지급
-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의 경우 외부위원은 지급가능하나 내부 위원은 불가
-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에 따른 야근수당(교비와 중복지급이 없도록 증빙, 지침 등을 품의 마련)
- 사업계획서, 연차보고서 작성 수당
- 정책연구 심의(자문) 수당
- 연구심의(자문)의 경우 관련 심의(자문)평가표에 따른 성과물로 지급
- 정책연구비 중 직원 연구 활동비(수당)

※ 연구라는 것은 직원의 당연 업무가 아니라 부가업무에 해당

- 특강(학점 불인정)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로

-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연구비 지급은 가능하나, 연구보고서 또는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는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(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연구성과물 검증 조직 등)에서 검토하는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필요
- 그 외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대학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

< 2017년 ACE+ 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>

○ 사업비 집행기준

-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,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

·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(인센티브 포함) 지급 불가

※ 단,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% 범위 내 집행 가능

⑥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

<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>

제20조(교육과정 개발비)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, 교재 개발비, 사례조사비,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, 목적, 근거, 결과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, **내부 구성원(교육연구단 소속 학과)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.**

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- 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 >

○ 인건비

-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(교원 및 전담직원)의 인건비(퇴직금, 4대 보험(사학연금 기관부담금 포함) 포함)

■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

■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채용계획, 채용계약서 등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

⑧ LINC플러스육성사업(전문대)

<전문대학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-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>

○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

-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(결과보고서 등)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■ 내부 교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(내부 교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, 심사비 등)

■ 프로그램 진행관련 보조요원(조교 등)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지급 불가

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(장학금성 경비, 멘토링비 등)

■ 既취창업자에 대한 개인적 수당·여비 등 지원 불가

※ 졸업생에 대한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공동 교육 기자재와 인프라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수당·여비 등은 지원 불가

4.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신입교수 워크숍 진행 경비 집행

- 2020학년도 1학기 신입교수 워크숍 진행경비를 대학재정지원사업비로 부적정 집행

② ◇◇◇과 40주년 기념행사 및 홈커밍데이 행사비 집행

- ◇◇◇과 40주년 기념행사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학재정 지원사업비로 부적정 집행

③ ○○○과 전공 학술제 개최관련 부대비용 집행

- 2019년 1학기 ○○○과 전공 학술제를 진행하면서 부대비용을 대학 재정지원사업비로 부적정 집행

④ 사업내용과 무관한 학교 셔틀버스 비용 집행

- 타 지역 학생 등·하교 셔틀버스 운영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

□ 관련규정

-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 업무 및 경상경비는 교비로 집행

① 국립대학육성사업

<국립대학육성사업관리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>

○ 사업비 지원

- 대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, 환경개선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기자재구입비, 인건비 등에 사업비 집행 가능

<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 구분>

- 가. 인건비
- 나.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(학생 교육·실습 활동비 포함)
- 다.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·운영비
- 라. 강의실 및 실험·실습실 환경 개선비
- 마. 교육·연구력 증진 및 실험·실습 기자재 확충
- 바. 장학금
- 사. 기타사업운영비

※ 세부내역별 기준은 "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(별표1)"를 참조

- 대학의 경상경비는 집행 불가

※ 예) 공공요금 및 제세 등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>

○ 기본원칙

-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

○ 비목별 집행불가 항목

비목	집행 불가 항목	비고
6. 기타 사업운영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-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,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-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-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·연구·산학협력·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여비, 도서구입비, 일반 수용비, 홍보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·지급 가능

③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

<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>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**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**

④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

< 2017년 ACE+ 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>

○ 사업비 집행기준

- **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,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**
-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(인센티브 포함) 지급 불가
 - ※ 단,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% 범위 내 집행 가능

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_예산편성 및 집행>

○ 예산편성 기준

-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편성내용·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
-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,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
-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출 비목

<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 >

1. 교육 환경 개선비
2. 기자재 구입운영비
3.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
4. 인건비
5. 기타 사업운영 경비

※ 비목별 집행기준은 "IV. 사업비 비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" 을 참조

※ 반드시 각 비목별 목적 및 범위 내에서 편성·집행

※ 부정비리에 의한 사업비 지급 제한 등으로 사업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경우

- **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,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**

5.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개인사유로 인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지급

- 글로벌 파트너 기업 MOU 체결을 위한 베트남 항공권을 개인사유로 취소하였음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비로 취소 수수료 부적정 집행

② 프로그램 운영시 여행사 수수료 중복 지급

-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여행사를 통해 운영하고 여행사 수수료를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음에도 별도로 지급하여 중복 지급 됨
※ 대학 자체회계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 임

③ 1년 미만 근무 퇴사직원 퇴직금적립액 미 환입

- 1년 미만 근무한 전담인력의 퇴직금을 대학에 적립하였으나, 적립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하지 않음(관련 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)
※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학에서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나, 전담 인력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음

□ 관련규정

- 사업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되어야 함

1. BK21플러스

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석사과정생의 장기연수기간(55박 56일)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

□ 관련규정

-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할 수 없음

<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>

제18조(국제화경비)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.

② 성과급 부적정 집행

□ 지적내용

- (사례1) 박사과정생에게 기여도평가 없이 논문게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
- (사례2) BK21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관련 집필료 등의 명목으로 성과급 지급

□ 관련규정

-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기여도 평가 실시하여야 함

<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>

제19조(사업단운영비)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, 성과급, 국내여비, 학술활동지원비,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, 일반수용비, 회의 및 행사개최비, 기타로 나누어 집행할 수 있으며,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2.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,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.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,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(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)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, 급여 성격의 성과급(정기적 지급, 고정급 지급 등)은 집행할 수 없다.(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.)

2. LINC플러스사업(일반대, 전문대)

①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건비의 국고지원금 70% 초과 집행(고도화형)

□ 지적내용

- LINC+사업단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를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 총액 70%을 초과하여 집행

□ 관련규정

- 'LINC+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'에 따라,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% 이내를 지원해야 함

<관련규정>

1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

<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집행기준>

○ 인건비(25% 이내)

-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(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% 이내를 지원,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 이하(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))
- LINC+사업단, 기업(지역)협업센터(ICC/RCC), 창업교육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기업지원센터, 공용장비센터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(시간외 수당, 퇴직금 등 포함)
 - ※ LINC+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
 - ※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

2.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

<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 집행 기준>

○ 인건비(25% 이내)

-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(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% 이내를 지원,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을 이하(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))
- LINC+사업단, 기업신속대응센터, 창업교육센터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(시간외 수당, 퇴직금 등 포함)
 - ※ LINC+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

②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집행

□ 지적내용

- (사례1) LINC+ 사업단은 현장활동비 등 명목으로 기업체 방문 시 선물비 집행
- (사례2) LINC+ 사업단은 협력기업 방문 시 화분 구입

□ 관련규정

-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섭외비, 선물비 등은 집행 제한 항목임

<관련 규정>

1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

<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>

○ 사업단 운영을 위한 기타 사업 운영비

- LINC+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비 집행(일반수용비 및 수수료, 여비,홍보비, 업무추진비, 회의비, 각종행사경비,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)

※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(홍보물, 상품권, 기념품 등)은 집행 불가

2.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

< 주요 집행 제한 항목(2019.11개정) >

- 대학 홍보, 산업체 방문,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섭외비, 선물비 등의 형태로 현금 지급 불가

③ 참여기업의 기술지도 자문비 초과집행

□ 지적내용

-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한 내부 교원에게 기술지도비를 초과하여 집행함

□ 관련규정

- 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,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정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계상 및 집행

④ 해외연수프로그램 시 학생인솔을 위한 교직원 인원 초과집행

□ 지적내용

-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인솔을 위하여 교직원 2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집행하였음

□ 관련규정

- 「사업비 관리운영지침」에 따라, 학생인솔 목적의 교직원 해외연수비 지원은 1명 이내로 제한

<LINC+플러스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>

- 국제협력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참여 교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, MOU 체결 등에 한하여 1명 이내 지원

⑤ 기업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경비 지원

□ 지적내용

- LINC+사업단은 가족회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 홈페이지 구축 경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집행 불가함

<전문대 LINC+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>

<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>

- 기업신속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
-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
-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-SET 지원
-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, 포럼, 산학협력협의회 운영, 산학협력가족회사 기술 지원, 애로기술 (기술, 경영, 디자인 등) 지원 및 컨설팅,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, 기술지도수당 등
 - ※ 기술지도수당은 참여교원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만 해당되며, 해당 산업체에서 기술지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집행가능(학생지도에 대한 기술지도 수당 지급 불가)
 - ※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(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는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일방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이행함을 의미함)
- 산학연계 기업지원 관련 외부 위탁 용역 비용

⑥ 현장실습비 초과 집행

□ 지적내용

- LINC+ 사업단은 2019년 하계 현장실습 이수 학생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 하였으나 현장실습 일정 중 결석한 학생에게도 현장실습 총 기간의 경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학생의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함

<관련 규정>

1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사업비 관리운영지침

<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>

○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

-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**학생의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집행**하여야 함

2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사업비 관리운영지침

<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>

○ 사회맞춤형 현장중심 학생역량강화 지원비(협약반별)

-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, **학생의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집행**하여야 함

⑦ 부적정 교안개발에 대한 원고료 집행

□ 지적내용

- 2019년 현장실습 교안개발을 'NCS(국가직무능력표준) 학습모듈'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안개발관련 원고료를 부당 집행

□ 관련규정

-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

<LINC+플러스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>

< 사업비 집행 원칙 >

- (산학협력 고도화형)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**청년 취·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**

※ LINC+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

3. 국립대학 육성사업

① 부적격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
□ 지적내용

- 대학원 수료학생을 연구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
 - ※ 관련규정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님)
 - ※ 연구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연구생으로 판단하여 장학금 지급

□ 관련규정

- 「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」에 따라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 후 장학금 등 지원 가능

국립대학 육성 관리지침

< 사업비 수혜 대상 >

-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
 - ※ 단,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(석사2년, 박사4년)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

4. 대학혁신지원사업

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- (사례1)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소모품으로 민방위복 구입
- (사례2)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학생 자가격리 식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,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교비로 집행해야 함

<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(20.1.31) >

- (집행원칙)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합리적 범위내 집행
- (집행가능항목) ① 코로나19 관련 대학 내 현황파악, 학생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(기존 교직원 제외) ②학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, 마스크, 체온계 등 물품구입 비용 및 용역비(버스 임차, 방역 등) ③ 동 사업비로 추진 중 이던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수수료
- (집행 제한 항목) ① 기숙사비(사용료, 임대료) ②식비(간식, 생수 등 포함)는 동 사업비로 집행 제한

5.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

① 증빙자료가 부족한 회의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-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의비 지출을 하였으나 회의록(회의장소, 참석자, 회의내용)을 작성하지 않음

□ 관련규정

- 회의비 집행 시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자,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

<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>

- 회의비는 대학 자체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**증빙서류(회의록 등)를 반드시 구비**하여야 함

※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

②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

□ 지적내용

-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범용성소프트웨어(한글소프트웨어 등)를 사업비로 집행

□ 관련규정

-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소프트웨어(한글, MS오피스 등)에 대한 집행은 불가함

< 관련 규정 >

<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FAQ 1, 2유형 >

Q-12 한글, MS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집행이 가능한가요?

A-12 **대학의 통상적인 업무/운영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소프트웨어(한글, MS오피스 등)에 대한 집행은 불가**하며, 동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수하게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은 집행 가능합니다.

③ 부적정 교재개발에 대한 원고료 지급

□ 지적내용

- 교재의 내용이나 목차 구성에 있어서 유사한 교재 작성 교원에게 원고료 각각 지급

□ 관련규정

-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은 집행 제한 항목임

<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>

< 주요 집행 제한 항목 >

-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
-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체험 활동·레저·문화활동(영화관람, 뮤지컬 관람 등), 외유성 프로그램 운영비
- **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**
- 어학교육원, 평생교육원,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·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
(단,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는 가능)
-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(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으로 관리)
※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(선물비, 상품권 등)은 집행 불가함. 단, 산학협력, 현장실습 등을 위해 기업의 실습관리자 등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나 대장 구비
- 동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
※ 단, 동 사업 관련 해외 어학연수, 직무연수 등 해외연수와 관련해 지원 절차 수립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 피드백을 전제로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 가능
-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
(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,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,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)
-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제반 경비는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, 산업체에서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항목 이중 지급 불가
- 다만, 산업체의 지원 경비가 대학의 지원 경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차액 지급 가능
- LINC+,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
- 부적격자(입학전 신입생, 휴학생,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)에 대한 장학금 지원
-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(예. 자격시험 합격 격려금, 취업 실적금, 프로그램 참여 독려금, 참여 마일리지 장학금 등)
-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

④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현금성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- 학습공동체 멘토튜터링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참여 멘티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활동비 집행

□ 관련규정

-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, 물품 직접지원은 집행 제한 항목임

<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>

< 주요 집행 제한 항목(기타운영비)>

-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일반적 목적의 업무·교직원 교육 훈련(교원 연수회, 직원 워크숍 등) 관련 경비
-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
- 학원 수강료, 외국어 시험 응시료
-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학술활동비
- **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, 물품 직접 지원**
- 학회, 연회비 등 참여교원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
-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(각종광고, 대학 브로셔(리플릿), 사업선정 현수막, 취업 축하 현수막,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) 및 행사비, 선물구입비
-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
- 주류 구입 비용
-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일회성 행사비,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외유성 출장비 등

⑤ 봉사활동 수혜자에게 물품지급

□ 지적내용

- ◇◇◇대학은 아름다운 ○○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미니화분을 수혜자에게 지급함

□ 관련규정

-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, 물품 직접지원은 집행 제한 항목임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>

○ 기타사업운영경비

-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의 교육·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,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
-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
- **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,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,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**

⑥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집행

□ 지적내용

- 글로벌 현장실습처 발굴을 위한 교원 해외 산업체 방문을 위한 홍보물품 구매

□ 관련규정

-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(선물비, 상품권 등)은 집행 불가함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>

< 주요 집행 제한 항목(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) >

-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
-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체험 활동·레저·문화활동(영화관람, 뮤지컬 관람 등), 외 유성 프로그램 운영비
-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
- 어학교육원, 평생교육원,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·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
(단,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는 가능)
-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(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으로 관리)
※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, 현금성 비용(선물비, 상품권 등)은 집행 불가함. 단, 산학협력, 현장실습 등을 위해 기업의 실습관리자 등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나 대장 구비
- 동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
※ 단, 동 사업 관련 해외 어학연수, 직무연수 등 해외연수와 관련해 지원 절차 수립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·피드백을 전제로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 가능
-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
(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,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,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)
-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제반 경비는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, 산업체에서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항목 이중 지급 불가
- 다만, 산업체의 지원 경비가 대학의 지원 경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차액 지급 가능
- LINC+,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
- 부적격자(입학전 신입생, 휴학생,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)에 대한 장학금 지원
-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(예. 자격시험 합격 격려금, 취업 실적금, 프로그램 참여 독려금, 참여 마일리지 장학금 등)
-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